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21 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김도읍・이헌승・구자근

신동욱 • 조지연 • 서지영

곽규택 · 김희정 · 김정재

권영세 · 장동혁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,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, 앞으로는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등의 열람・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6조 및 제17조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409호) 및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1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·심리에 관하여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성폭력범죄"는 "아동학대범죄"로, "피해자"는 "피해아동"으로 본다.
- ③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특정강력범죄"는 "아동학대범죄"로, "피해자"는 "피해아동"으로 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의 개정
규정 중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4제1항을

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사건 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변호사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 전의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에는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6조제4항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행 혂 선임의 특례) ① ~ ③ (생

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 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 물,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다.

⑤ • ⑥ (생 략)

략)

조사 · 심리에 관하여는 「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」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| 제29조를 각각 준용 한다. 이 경우 "성폭력" 또는 "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"는 "아동학대범죄"로, "피해자"는 "피해아동"으로 본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아 개 정

제16조(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제16조(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

<삭 제>

(5)·(6)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준용) ① 아동학대범죄의 제17조(준용)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· 심리에 관하여는 「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」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성폭력범 죄"는 "아동학대범죄"로, "피해 자"는 "피해아동"으로 본다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에 관하여는 「특정강력범 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

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특정강력범죄"는 "아동학대범죄"로, "피해자"는 "피해아동"으로 본다.